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8

제출년월일 : 1998. 11.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련부서 : 행정관리담당관

## 개정사유

교육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구조조정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5916호)과 동규정시행규칙(교육부령 제725호)이 '98.10.16일자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조직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제정 목적에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를 삽입(안 제1조)
-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제조직의 폐지로 현행 의사계와 의안계를 폐지하고 의사과의 본장사무를 신설(안 제3조)
- 지방공무원 감축 추진계획에 의거 의사국의 정수를 15명에서 13명으로 조정(안 제4조)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 개정근거

-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0조)

## 조 례 안 : 불입

## 참고사항 : 불입

- 신·구 조문 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22조 규정에”를 “제22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0조에”로 한다.

제2조중 “의장의”를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운영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에 관한 사무
3. 회의진행 보좌
4. 교육위원 활동 보좌
5.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
6. 청원 및 진정처리
7. 회의록 작성·보관·발간 및 열람
8. 교육위원회 활동 홍보 및 각종 간행물 발간
9. 교육위원 재산등록 등 신분에 관한 사항
10. 직원인사 및 복무관리
11. 문서보안 및 관인의 관리
12. 소관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
13. 경비·방청 및 회의장 질서 유지
14. 시설장비 관리 및 물품 수급관리
15. 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 사항

제4조중 “15명”을 “13명”으로, “그 내역은 별표와 같다”를 “직급별 정원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위원회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규정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교육위원회사무직원의사무분장 규정('96.2.29 규정 제4호)은 이를 폐지한다.